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71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박희승·윤준병·이해식
박민규·남인순·이재정
한민수·오세희·김한규
강득구·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또한 보호소년이 출원 후 학교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는 매우 중요함.

소년원학생은 전적학교의 학적이 유지되는 학생으로서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소년원에 수용된 아동·청소년의 학습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년원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 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60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4호에서 정한 보호소년등

⑩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대안학교를”을 “대안학교, 제60조의4에 따른 소년원학교를”로, “제60조의4에”를 “제60조의5에”로 한다.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2까지를 각각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3까지로 하고, 제6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0조의7(종전의 제60조의6)제1항 중 “제60조의5제1항에”를 “제60조의6제1항에”로 하고, 제60조의8(종전의 제60조의7)제1항 중 “제60조의5에”를 “제60조의6에”로, “제60조의6제2항에”를 “제60조의7제2항에”로 하며, 제60조의9(종전의 제60조의8)제1항 중 “제60조의6에”를 “제60조의7에”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60조의8)제4항 중 “제60조의6제1항에”를 “제60조의7제1항에”로 하며, 제60조의10(종전의 제60조의9)제1항 중 “제60조의5에”를 “제60조의6에”로 하고, 제60조의11(종전의 제6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의5에”를 “제60조의6에”로 하며, 제60조의12(종전의 제60조의11)제1항 중 “제60조의5제1항에”를 “제60조의6제1항에”로 한다.

제60조의4(소년원학교)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원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소년원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를 “제60조의7부터 제60조의9까지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60조의7제5항을”을 “제60조의8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의5제1항에”를 “제60조의6제1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⑨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87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u>」 제1조의2제4호에서 정한 <u>보호소년등</u>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 한 <u>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수용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u>

⑩ (생략)

제60조(각종학교) ① (생략)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신 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60조(각종학교)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안학
교, 제60조의4에 따른 소년원학
교를-----제60조의5에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4(소년원 학교) ①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 학교(이하 “소년원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소년원학교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

	<u>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③ <u>소년원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0조의4·제60조의5 (생략)	제60조의5·제60조의6 (현행 제60조의4 및 제60조의5와 같음)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60조의6제1항에-----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6제2	제60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60조의6에----- ----- ----- ----- ----- ----- -----제60조의7제2

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0조의8(조사·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항에

② ~ ⑥ (현행과 같음)

[illegible]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 지원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60조
의7제1항에-----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
-----제60조의6에-----

-----.

②·③ (생 략) <u>제60조의10</u>(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u>제60조의5</u>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다. 1.·2. (생 략) <u>제60조의11</u>(비용의 징수)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60조의5제1항</u>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u>제60조의12</u>(통학 지원) (생 략) <u>제62조</u>(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u>제60조의</u>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0조의11</u>(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 -----<u>제60조의6</u>에----- ----- ----- ----- ----- -----. 1.·2. (현행과 같음) <u>제60조의12</u>(비용의 징수) ① ---- ----- -----<u>제60조의6제1항</u>에----- ----- ----- ----- ----- -----. ② (현행과 같음) <u>제60조의13</u>(통학 지원) (현행 제60조의12와 같음) <u>제62조</u>(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60조의7</u>
--	--

6부터 <u>제60조의8까지</u>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① <u>제60조의7제5항</u> 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략)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60조의5제1항</u>에 따 른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 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	부터 <u>제60조의9까지</u>에----- ----- ----- ----- -----. 제67조(벌칙) ① <u>제60조의8제5항</u> 을-----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60조의6제1항</u>----- ----- ----- ----- -----.
---	--